

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이유서

의안번호	15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 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정 이 유

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 요 골 자

- 세입재원(93. 1. 1 이후 징수 결정액부터 적용)
 - 주차요금, 주차위반과태료, 기타 수입 등
- 세출용도
 - 주차시설 확충관리,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비용, 기타 주차관련사업
-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 또는 융자 :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, 방법, 융자금 상환 등은 별도 규정
- 잉여금 처리 :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
- 예비비 설치 :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가능
- 준 용 : 이 조례의 규정 외에는 일반회계 준용
- 시 행 일 : 1993. 1. 1

3. 관 계 법 령

- 주차장법 제21조의 2